+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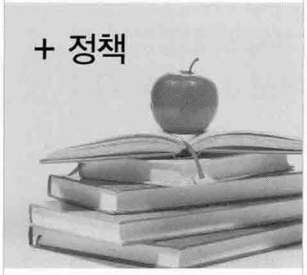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개정이유

법의 목적에 맞춰 법률의 명칭을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 오리 고기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 금지, 부상 · 난산 · 산욕마비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장 밖에서 긴급도살 행위 제한, 쇠고기 수입판매업 신설 및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1) 법의 목적이 축산물의 가공 · 처리과정에서의 위생 · 안전 관리 및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취지에 맞춰 법률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법 취지에 맞춰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법률의 명칭을 법의 취지에 맞춰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법률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상 · 난산 · 산욕마비 ·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긴급 도살 허용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닭 · 오리고기의 자가 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시 ·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안에서 닭 · 오리를 자가조리 판매하는 경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가 도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 전염병 전파의 한 경로가 되는 문제가 있음.

(2)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닭 · 오리고기의 위생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점에서 닭 · 오리의 자가 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을 금지함.

(3)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닭 · 오리고기를 음식점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가금류의 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 및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쇠고기 수입판매업 영업 신설 관련 사항(안 제21조 및 제22조)

(1)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영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저급품 수입 등에 따른 위해 발생 소지가 있고 위생안전에 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

(2) 국민들의 관심이 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해요소의 사전차단과 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허가제로 신설하려는 것임.

(3) 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생 · 안전성의 향상과 수입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여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바. 식품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축산물 위생 ·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영업자들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0조).

사. 영업자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제46조 단서).

아.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